

## 대학생 현장실습 표준협약서

1. (목적) 이 협약서는 “회사”명 대표 (이하 “실습기관”)와 “현장실습 실습생” 성명 (이하 “학생”) 상호 간에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,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“현장실습 실습생”이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달리 실습생, 견습생,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(업무)을 경험하는 자를 말한다.

2. (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상호 협력) 실습기관은 폭넓은 현장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의 전공 및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에 배치하고, 해당 업무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담당자 등이 지도하는 등 내실 있는 현장실습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학생은 실습 기간 동안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며, 실습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. 아울러, 체험을 위한 기계 등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며, 체험 과정에서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.

3. (실습기간) 실습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
\* 실습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4개월 이하로 함.

4. (실습일 및 실습시간) 실습 일은 주 일(매주 요일부터 요일까지)이며 실습시간은 : ~ : (휴게시간: : ~ : )으로 한다.

\*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야간(22:00부터 익일 06:00까지) 시간에는 실습 불가(학생이 동의하더라도 불가) 하는 등 실습 협약서에 정한 시간 이외의 시간 및 휴일에 실습을 시킬 수 없음.

특히, 실습학생에게 유해, 위험한 내용의 실습을 시킬 수 없음.

5. (실습장소) 으로 정함.

6. (실습연수지원금 지원)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원을 매월 일 지급한다.

- 지급내역: 총 원
- 지급방법: 은행 계좌(계좌번호: )
- 산정기간: 당월 일부터 당(익) 월 일까지

<회사용>

## 대학생 현장실습 표준협약서

1. (목적) 이 협약서는 “회사”명 대표 (이하 “실습기관”)와 “현장실습 실습생” 성명 (이하 “학생”) 상호 간에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,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“현장실습 실습생”이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달리 실습생, 견습생,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(업무)을 경험하는 자를 말한다.

2. (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상호 협력) 실습기관은 폭넓은 현장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의 전공 및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에 배치하고, 해당 업무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담당자 등이 지도하는 등 내실 있는 현장실습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학생은 실습 기간 동안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며, 실습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. 아울러, 체험을 위한 기계 등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며, 체험 과정에서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.

3. (실습기간) 실습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
\* 실습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4개월 이하로 함.

4. (실습일 및 실습시간) 실습 일은 주 일(매주 요일부터 요일까지)이며 실습시간은 : ~ : (휴게시간: : ~ : )으로 한다.

\*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야간(22:00부터 익일 06:00까지) 시간에는 실습 불가(학생이 동의하더라도 불가) 하는 등 실습 협약서에 정한 시간 이외의 시간 및 휴일에 실습을 시킬 수 없음.

특히, 실습학생에게 유해, 위험한 내용의 실습을 시킬 수 없음.

5. (실습장소) 으로 정함.

6. (실습연수지원금 지원)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원을 매월 일 지급한다.

- 지급내역: 총 원
- 지급방법: 은행 계좌(계좌번호: )
- 산정기간: 당월 일부터 당(익) 월 일까지

## 대학생 현장실습 표준협약서

1. (목적) 이 협약서는 “회사”명 대표 (이하 “실습기관”)와 “현장실습 실습생” 성명 (이하 “학생”) 상호 간에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,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“현장실습 실습생”이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달리 실습생, 견습생,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(업무)을 경험하는 자를 말한다.

2. (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상호 협력) 실습기관은 폭넓은 현장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의 전공 및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에 배치하고, 해당 업무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담당자 등이 지도하는 등 내실 있는 현장실습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학생은 실습 기간 동안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며, 실습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. 아울러, 체험을 위한 기계 등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며, 체험 과정에서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.

3. (실습기간) 실습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
\* 실습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4개월 이하로 함.

4. (실습일 및 실습시간) 실습 일은 주 일(매주 요일부터 요일까지)이며 실습시간은 : ~ : (휴게시간: : ~ : )으로 한다.

\*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야간(22:00부터 익일 06:00까지) 시간에는 실습 불가(학생이 동의하더라도 불가) 하는 등 실습 협약서에 정한 시간 이외의 시간 및 휴일에 실습을 시킬 수 없음.

특히, 실습학생에게 유해, 위험한 내용의 실습을 시킬 수 없음.

5. (실습장소) 으로 정함.

6. (실습연수지원금 지원)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원을 매월 일 지급한다.

- 지급내역: 총 원
- 지급방법: 은행 계좌(계좌번호: )
- 산정기간: 당월 일부터 당(익) 월 일까지

<학교용>

## 7. (실습내용)

- 실습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학생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8. (산업안전보호) 실습기관은 학생이 실습 업무에서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,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.
- 9. (보험가입)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련 대학 등 제3자가 학생을 위하여 상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0. (성희롱예방) 실습기관은 실습과정에서 학생에 대하여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.
- 11. (복리후생지원) 실습기관은 학생이 일반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 없이 식당, 휴게실, 의무실, 기숙사,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.
- 12. (증명서발급) 실습기관은 학생이 요구하는 경우 실습과정 참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.
- 13. (준용)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」에 따른다.

으로 정함.

## 7. (실습내용)

- 실습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학생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8. (산업안전보호) 실습기관은 학생이 실습 업무에서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,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.
- 9. (보험가입)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련 대학 등 제3자가 학생을 위하여 상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0. (성희롱예방) 실습기관은 실습과정에서 학생에 대하여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.
- 11. (복리후생지원) 실습기관은 학생이 일반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 없이 식당, 휴게실, 의무실, 기숙사,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.
- 12. (증명서발급) 실습기관은 학생이 요구하는 경우 실습과정 참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.
- 13. (준용)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」에 따른다.

으로 정함.

## 7. (실습내용)

- 실습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학생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8. (산업안전보호) 실습기관은 학생이 실습 업무에서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,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.
- 9. (보험가입)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련 대학 등 제3자가 학생을 위하여 상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0. (성희롱예방) 실습기관은 실습과정에서 학생에 대하여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.
- 11. (복리후생지원) 실습기관은 학생이 일반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 없이 식당, 휴게실, 의무실, 기숙사,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.
- 12. (증명서발급) 실습기관은 학생이 요구하는 경우 실습과정 참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.
- 13. (준용)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」에 따른다.

으로 정함.

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“체험기관”, “학생”, “운영기관”이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도장

2019. 11. 10.

도장

학생  
44인

도장

2019. 11. 10.

도장

학생  
44인

도장

44인

도장

(실습기관)	사업자등록번호		
주 소			
실 습 기 관 명			
대 표	(인)		
(학생)	주 성	소 명	(인)
(운영기관)	대 학 명	전 성 미	(인)
	대 셔 장		

학교  
도장

(실습기관)	사업자등록번호		
수 소			
실 습 기 관 명			
대 표	(인)		
(학생)	주 성	소 명	(인)
(운영기관)	대 학 명	전 성 미	(인)
	대 셔 장		

학교  
도장

(실습기관)	사업자등록번호		
수 소			
실 습 기 관 명			
대 표	(인)		
(학생)	주 성	소 명	(인)
(운영기관)	대 학 명	전 성 미	(인)
	대 셔 장		

&lt;회사용&gt;

&lt;학생용&gt;

&lt;학교용&gt;

회사 도장		학생 수인		학교 도장		회사 도장		학생 수인		학교 도장		회사 도장		학생 수인		학교 도장		
(실습기관)	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실습 기관 명 대 표	(인)	(실습기관)	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실습 기관 명 대 표	(인)	(실습기관)	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실습 기관 명 대 표	(인)	(학생)	주 소 성 명	(인)	(학생)	주 소 성 명	(인)	(학생)	주 소 성 명	(인)	
(운영기관)	대 학 명 처 장	전 성 미	(인)	(운영기관)	대 학 명 처 장	전 성 미	(인)	(운영기관)	대 학 명 처 장	전 성 미	(인)	(운영기관)	대 학 명 처 장	전 성 미	(인)	(운영기관)	대 학 명 처 장	전 성 미

<회사용>

<학생용>

<학교용>